

제314회 임시회

2012. 9. 11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
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종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조례가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,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법 조항에 맞게 조정 (안 제2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2. 8. 9 ~ 8. 28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